

회 의 록

제 목 : 제23차 운영위원회 개최(수가관리위원회)

일 시 : 2011. 10. 12(수) 10:00

장 소 : 3층 소회의실

참 석 자 ○ 위원장 : 소 장(문무성)

○ 위 원 : 운영지원팀장(이보현), R&D 1팀장(류제청), R&D 2팀장(김신기), R&D 3팀장(이석민), 의료기기시험검사센터장(최기원), 제작팀장(김순중)

○ 간 사 : 운영지원차장(권태욱)

회의내용

위 원 장 : 지금부터 ‘의안번호 제2011-28호’ 『재활보조기구 본인 부담금 기준(안)』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. [개회선언]

위 원 장 :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주문 및 제안이유 등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간 사 : 의결주문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 낭독

위 원 장 : 심의사항 중 비산재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품목 이외의 산재급여 품목을 요구시 적용율에 대하여 심의코저 합니다.

건강보험 급여품목에는 없으나, 산재급여 품목에는 있는 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전자의수, 넓적다리의지(공압식또는유압식), 넓적다리의지(인공지능식)등을 볼수 있는데 비산재 환자가 이러한

산재급여 품목을 요구시에 본인 부담금을 산재수가로 적용하여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김 순 중 : 전자의수나 넓적다리 의지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부품은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되고 있는 부품사용으로 산재 수가로 적용하여 부담금을 발생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

위 원 장 : 김순중 팀장 의견에 동의하십니까?

위원일동 : 동의합니다.(전원동의)

위 원 장 : 다음은 각 재정별 환자에 대한 특수 부품을 요구할 경우 적정 적용율에 대하여 심의코자 하오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
류 제 청 : 산출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어떠한 기준으로 본인 부담액을 적용하고 있습니까?

김 순 중 : 현재 인천과 동해 센터에서는 산재는 일반관리비의 5%, 비산재의 경우 10%를 적용하고 창원, 대전, 순천 센터에서는 산재, 비산재 동일하게 10%를 적용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.

이 보 현 : 산재와 비산재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?

김 순 중 : 완성제품의 경우 현재 산재 5% 비산재 10%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.

위 원 장 : 부품은 완제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, 비산재 동일 하게

일반 관리비에 10%를 적용하여 본인 부담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

김 순 중 : 10%를 산정하여 본인 부담액을 발생시킨다고 해도 외부 민간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

위 원 장 :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

이 보 현 : 재정 구분없이 10%를 적용하여 본인 부담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

위 원 장 : 이보현 팀장 의견에 동의하십니까?

위원일동 : 동의합니다.(전원동의)

위 원 장 : 완성 제품의 경우는 본부 승인 사항으로서 현행대로 유지 하겠습니까. 동의하십니까?

위원일동 : 동의합니다.(전원동의)

위 원 장 : 마지막으로 진료비 감면과 관련하여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,보조기 제작 외 완성제품의 경우 적절한 감면 기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보 현 : 진료비 감면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 완성 제품의 경우 동일하게 감면 적용하게 되면 실구입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므

로 완성제품은 실구입가로 조정하여 감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.

위 원 장 :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?

위원일동 : 동의합니다.(전원동의)

위 원 장 : 재활보조기구 본인 부담액 기준(안) 심의는 원안의결 되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위 원 장 : 이것으로 제2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**[폐회선언]**

2011. 10. 12.

작성자 : 간사 권 태 욱